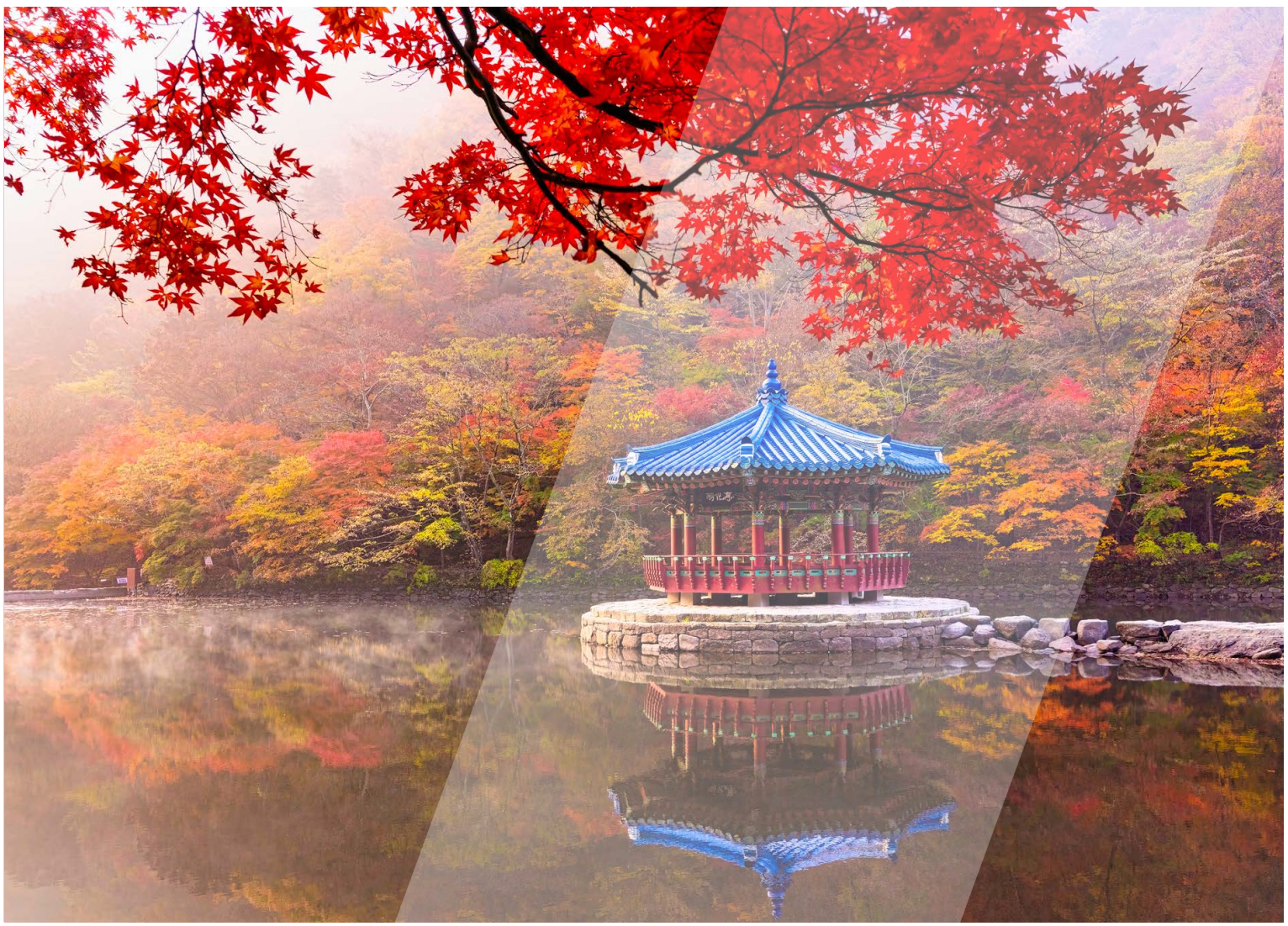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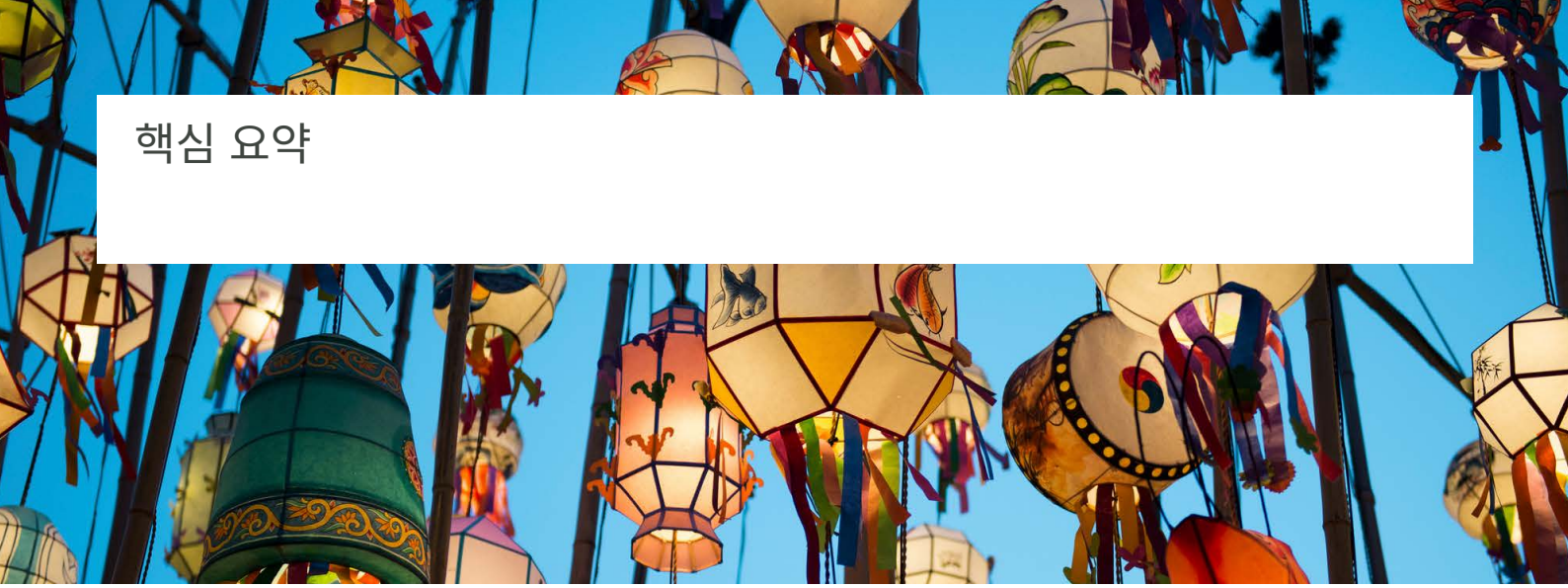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

제 21호: 2026년 10월

forv/s
mazars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는 한국의 포비스 마자르(새빛회계법인)에서 발행합니다. 이 발행물은 고객사에게 한국 내 감사 및 세무, 기타 법규에 대한 최신 정보와 개정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비스 마자르 및 한국의 포비스 마자르는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포비스 마자르는 본 정보와 자료의 정확성, 적합성, 신뢰성 또는 완전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정보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핵심 요약

세법 업데이트

최근 세무 주요 판례 및 제도 동향

최근 판례와 국세청 사전답변을 통해 거래 재구성 및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한 주요 세무 이슈를 살펴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의 범위와 한계를, 국세청은 통합고용세액공제상 개정된 청년 간주 규정의 적용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더 보기](#)

회계감사 및 회계기준 업데이트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관련 사전 주식공시 모범사례

2027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K-IFRS 제1118호의 주요 변경사항과 사전 주식공시 모범사례를 살펴봅니다. 영업손익 표시체계, MPM 공시, 현금흐름 분류 및 주된 사업활동에 따른 손익 분류 등 재무제표 전반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은 기준서 적용이 재무성과와 공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데이터와 공시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보기](#)

블로그

최근 블로그 업데이트

최근 발행된 블로그에서는 이전가격의 기본 개념과 이전가격 산출방법을 비롯해 국가 R&D 과제 수행기관 선정, 공익법인 출연재산 관련 상속세 혜택 등 다양한 세무·회계 및 제도 관련 주제를 다룹니다.

[더 보기](#)

세법 업데이트

최근 세무 주요 판례 및 제도 동향

최근 판례와 국세청 사전답변을 통해 거래 재구성 및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한 주요 세무 이슈를 살펴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의 범위와 한계를, 국세청은 통합고용세액공제상 개정된 청년 간주 규정의 적용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법 업데이트

최근 세무 주요 판례 및 제도 동향

서울행정법원 판결: 단일 거래의 복수 거래 재구성 한계

서울행정법원은 직원들이 원고 을에게 직접 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단일 거래를 “직원들 → 원고 갑 → 원고 을”의 복수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납세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과세관청은 당사자의 의사와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단계적 주식이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우회거래나 다단계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지, 사법상 유효한 단일 거래를 복수 거래로 분할하는 역적용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범위에도 조세법률주의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계약 형식과 실제 자금이나 권리의 흐름이 일치하고 당사자가 단일 거래를 선택한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과세관청이 별도의 중간 거래를 의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과 거래의 사업상 필요성, 의사결정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여전히 중요하며, 해당 판결은 1심 판결이므로 상급심의 최종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2.25. 선고 2025구합53977).

- 실무 시사점: 주식 보상, 임직원 지분거래 및 그룹 내 주식이전 시 계약 당사자, 대금 흐름, 권리이전 시점과 사업상 목적을 일관되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통합고용세액공제상 2024년 채용자의 청년 간주 규정

국세청은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이 2024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2026년 개정된 청년 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2024년 채용 당시 34세 이하였으나 2025년 12월 이후 청년 연령 요건을 초과하였고, 질의 법인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근로자가 이후 연령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였으나, 관련 부칙은 적용 대상과 간주 기간을 근로 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을 최초 공제연도로 하더라도 2024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사전-2026-법규법인-0729, 2026.7.30).

- 주요 내용: 개정 청년 간주 규정의 적용 여부는 최초 공제연도뿐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무 시사점: 채용 연도, 계약 당시 연령, 병역이행 기간 및 경과규정을 직원별로 확인하고, 급여와 인사자료를 채용 연도별로 구분하여 공제 대상 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회계감사 및 회계기준 업데이트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관련 사전 주식공시 모범사례

2027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K-IFRS 제1118호의 주요 변경사항과 사전 주식공시 모범사례를 살펴봅니다. 영업손익 표시체계, MPM 공시, 현금흐름 분류 및 주된 사업활동에 따른 손익 분류 등 재무제표 전반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은 기준서 적용이 재무성과와 공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데이터와 공시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기준 업데이트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금융감독원은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2027년 의무적용을 앞두고 기업들의 원활한 기준서 도입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범사례는 새로운 기준서 적용에 따른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영업손익 산정 방식의 변경,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공시, 현금흐름 분류 변경 등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공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IFRS 제1118호 도입 개요

K-IFRS 제1118호는 현행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는 기준서로,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K-IFRS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은 K-IFRS 제1008호에 따라 해당 기준서를 소급 적용하여 비교기간 정보도 재작성해야 합니다.
- 사전 주석공시는 연결재무제표뿐 아니라 개별재무제표 또는 별도재무제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준서 적용 영향이 중요한 경우 기업은 적용 준비상황 및 예상 영향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및 중단영업 범주로 구분하도록 요구하며, 새로운 영업손익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에 대한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 현금흐름표상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의 분류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 재무제표의 표시 및 공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유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시사점

- 기업은 비교 표시되는 2026년 재무제표부터 예상 영향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공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 감사인은 경영진의 영향평가 프로세스 및 관련 공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기준 업데이트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손익계산서 표시체계 변경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영업 범주로 분류됩니다.
- 영업손익은 새로운 체계에 따른 필수 중간합계로 제시됩니다.
- 일부 기업의 경우 기존 영업외손익 항목이 영업손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분법손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등의 분류가 현행 실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영향

- 유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환입 등의 분류 체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분법손익은 일반적으로 투자 범주에 포함되어 영업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당기순손익은 변동되지 않더라도 영업손익은 유의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목	K-IFRS 제1001호	과목	K-IFRS 제1118호	증가
매출액	XX	매출액	XX	-
매출원가	XX	매출원가	XX	-
매출총이익	XX	매출총이익	XX	XX
판매비와 관리비	XX	판매비와 관리비	XX	-
지분법손익	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	-
...	XX	유형자산손상차손	XX	-
		외화환산이익(영업)	XX	-
영업손익	XX	영업손익	XX	XX
기타수익	XX	지분법손실	XX	-
기타비용	XX	기타 투자손익	XX	-
이자비용	XX	외환차손익(투자)	XX	-
외화환산이익	XX		XX	-
외화환산손실	XX	재무손익 및 법인세 비용 차감전손익	XX	XX
	XX	차입금 및 리스부채 이자비용	XX	-
		퇴직급여부채 이자비용	XX	-

회계기준 업데이트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과목	K-IFRS 제1001호	과목	K-IFRS 제1118호	증가
		외화환산손실(재무)	XX	-
		...	XX	-
법인세 비용 차감전손익	XX	법인세 비용 차감전손익	XX	XX
법인세 비용	XX	법인세 비용	XX	-
당기순손익	XX	당기순손익	XX	-
기타포괄손익	XX	기타포괄손익	XX	-
총포괄손익	XX	총포괄손익	XX	-

표1. K-IFRS 제1118호 적용에 따른 손익계산서 표시체계 변화 예시

또한 통합 및 세분화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재무상태표 표시항목이 보다 세분화되며, 기존에 단일 항목으로 표시되던 금융자산 등이 측정기준에 따라 별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재무상태표상 “금융자산”으로 표시되는 항목은 측정기준에 따라 별도 표시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과목	K-IFRS 제1001호	과목	K-IFRS 제1118호
자산총계	XX	자산총계	XX
현금 및 현금성 자산	XX	현금 및 현금성 자산	XX
금융자산	XX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	XX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XX
...	XX	...	XX
부채총계	XX	부채총계	XX
매입채무	XX	매입채무	XX
...	XX	...	XX
자본총계	XX	자본총계	XX

표2. K-IFRS 제1118호 적용에 따른 재무상태표 표시 예시

회계기준 업데이트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시사점

- 기업은 KPI, 경영성과 평가체계 및 차입약정상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야 합니다.
-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영업손익 변동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인은 범주 분류의 적정성과 주된 사업활동 판단의 합리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공시 도입

K-IFRS 제1118호는 재무제표 외부의 공개 커뮤니케이션에서 활용되는 특정 성과지표를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유의사항

- 조정영업이익, 조정 EBITDA 등 경영진이 성과평가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표가 성과측정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표를 사용하는 이유와 산출 방식을 공시해야 합니다.
-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IFRS 기준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 조정항목에 대한 세효과 및 비지배지분 영향도 공시해야 합니다.

시사점

- 공시 대상 지표의 식별과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IR 자료, 사업보고서, 보도자료 등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성과지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 감사인은 성과측정치 식별의 완전성과 조정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흐름표 분류체계 변경

K-IFRS 제1118호 제정과 함께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도 일부 개정되어 현금흐름 분류 체계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유의사항

- 간접법 적용 시 영업활동 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됩니다.
-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의 분류 선택권이 삭제됩니다.
- 이자수취 및 배당금수입은 일반적으로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됩니다.
- 이자지급은 일반적으로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됩니다.

시사점

- 현금흐름 관련 핵심 성과지표와 분석모형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리츠(REITs), 투자회사 등은 영향이 특히 클 수 있으므로 사전 분석이 중요합니다.
- 감사인은 현금흐름 재분류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목	舊 K-IFRS 제1007호(A)	新 K-IFRS 제1007호(B)	증감(B-A)
영업활동 현금흐름	XX	XX	XX
투자활동 현금흐름	XX	XX	XX
재무활동 현금흐름	XX	XX	XX

회계기준 업데이트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주된 사업활동 판단의 중요성

K-IFRS 제1118호는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이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인지 여부에 따라 손익 분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투자부동산 사업, 금융제공 사업 등은 주된 사업활동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주된 사업활동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부 투자손익 또는 금융손익이 영업 범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경영진 판단에 따라 재무성과 지표에 유의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 기업은 판단 근거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 감사인은 사업모델, 수익구조, 경영진 보고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

이전가격이란? 해외 자회사 거래의 핵심

이 글에서는 이전가격의 기본 개념부터 정상가격원칙, 기업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주요사항까지 살펴봅니다.

[더 보기](#)



사업비정산

국가연구개발사업 거래처 선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이 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거래처 선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사전 확인 항목을 살펴봅니다.

[더 보기](#)



세무

정상가격 산출방법 완벽 정리: CUP, RPM, CPM 차이는?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이전가격 방법의 기본 개념과 적용 사례, 그리고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더 보기](#)



세무

상속재산의 공익법인 출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이 글에서는 공익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적용되는 세제 혜택과 주요 사후관리 요건을 살펴봅니다.

[더 보기](#)



핵심 지표

주요세율 및 4대 보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6.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8.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41.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6.2%
10억원 초과	49.5%

* 지방소득세 포함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2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미만	24.2%
3000억원 초과	27.5%

* 지방소득세 포함

4대 보험

과세표준	사업자 부담비율	근로자부담비율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4.1%	4.1%
국민연금	4.75%	4.75%
고용보험	0.9% + (0.25% ~ 0.85%)	0.9%
산재보험	0.7% ~ 18.6%	-
총합	월 평균보수의 약 10.6% ~ 28.6%	월 평균보수의 약 9.75%

위 표에 기재된 사업규모 및 사업종류에 따른 추가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료에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Contacts

이정민

대표이사, 감사 및 인증 총괄
jung-min.lee@forvismazars.com

박승하

파트너, 부회장, 세무
seung-ha.park@forvismazars.com

심현호

파트너, 코리안 데스크 총괄
hyun-ho.shim@forvismazars.com

줄리앙 에르보

리드 파트너, 아웃소싱 및 국제 데스크
julien.herveau@forvismazars.com

심규택

파트너, FS (금융기관) 총괄
gyu-taek.sim@forvismazars.com

정상안

파트너, 세무 총괄
sang-an.jeong@forvismazars.com

Forvis Mazars Group SC는 선도적인 글로벌 전문 서비스 네트워크인 Forvis Mazars Global의 독립 회원사입니다. 감사, 세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국제 통합 파트너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0,000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전문성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비즈니스 성장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포비스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은 Forvis Mazars Group SC의 독립 회원사로서 12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회계감사, 세무, 자문,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발행물 제작에 참여한 마자리안:

이정민, 줄리앙 에르보, 박승하, 정상안, 박동원, 강민경, 공태희

© 2026년 10월

forvismazars.com/kr

forv/s
mazars